

Ⅲ - 6	제 목	가설건축물의 사무실 인정 여부	
회신일자	2008-12-16	회신방법	지경부 전자민원
질 의 요 지			
○ 건축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내 용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3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가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의 하나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을 요하는 것은 부실한 업체의 난립을 막아 전기공사업자로서의 안정된 지위를 유지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전기공사업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전기공사업법상 사무실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